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5. 6.

시민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4월 2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8년 4월 23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1998년 4월 29일 제56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가. 제안이유

-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상 기금의 용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타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근거법령 변경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규정”으로 함. (안 제1조)
- “기금의용도”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및”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을 위한 타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제한)

본 조례의 개정은 국제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하여 기술축적 및 시설확충과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므로 주민의 주거안정과 인구의 지방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의 법 근거가 변경되어 현행법에 맞는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조례 제1조 및 제3조를 검토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은 조례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2항3호(별지참조)도 조례개정의 법 근거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3항 “기타 영등포구의의 출연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의 내용중 출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1항에 금지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2항의 단서에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서울시 행정 13330-11('98. 1. 6) 제목 : 기부금품모집·접수관련조례 정비, 내무부 재경13300-990('97. 12. 26)호와 관련하여 이미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조례 내용의 출연금은 삭제 정비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3호에 출연금은 삭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례개정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조례의 중요성을 잊고 필요한 내용만 개정 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4.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1항과 서울시 행정 13300-11호('98. 1. 6, 제목 : 기부금품모집·접수관련조례 정비) 및 내무부 재경13300-897호('96. 11. 19, 제목 : 각종 기금조례 제·개정시 주민성금·기부금 등 조항 신설금지) 등과 관련 정비 지시에 근거

나. 수정내용

조례안 제3조(기금의 조성)3호의 “기타 영등포구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을 삭제하는 내용.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 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1호
----------	------------

제안년월일 : '98. 4. 29
제안자 : 김동철위원외 1인

1. 수정이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1항과 서울시 행정 13300-11호('98. 1. 6, 제목 : 기부금품 모집·접수관련조례정비) 및 내무부 재경 13300-897호('96. 11. 19, 제목 : 각종 기금조례 제·개정시 주민 성금·기부금 등 조항 신설금지) 등과 관련 정비 지시에 근거

2. 수정내용

조례안 제3조(기금의 조성)3호의 “기타 영등포구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을 삭제하는 내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 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u>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등의 수익금 3. 기타 영등포구외의 출연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용자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u>에 의하여</p> <p>.....</p> <p>.....</p> <p>.....</p> <p>.....</p> <p>.....</p> <p>.....</p> <p>제4조(기금의 용도)</p> <p>.....</p> <p>..... 용자하거나 <u>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u>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p>	<p>제1조(목적) - 개정안과 같음</p> <p>제3조(기금의 조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삭제> <p>제4조(기금의 용도)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1
----------	-----

제출년월일 : 1998. 4. 2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상 기금의 용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타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근거법령 변경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규정”으로 함. (안 제1조)

나. “기금의용도”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및”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을 위한 타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이견없음
- 따로붙임 :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로 한다.

제4조중 “용자하거나”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및”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u>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규정</u> 에 의하여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금으로 용자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용자하거나,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998. 5. 6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4월 20일 영등포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4월 2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8년 4월 27일 제56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상정
1998년 4월 29일 제56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국장 이종현)

-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8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